

##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김현철\*\*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법이론적 쟁점들 |
| 2.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둘러싼 쟁점 | 5. 마치는 말    |
| 3.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     |             |
- 

**【국문초록】**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법원의 논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법원의 논증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를 일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생명윤리안전법과 생명윤리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등록제도를 통해 등록된 우리나라 줄기세포주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줄기세포연구자들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줄기세포가 윤리적이고 품질있는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해야 할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줄기세포주 등록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문언상 형식적으로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만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주어야 하는 정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알려진 줄기세포주를 등록시켜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제거해 주는 것 이상의 상당한 공익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색인어】** 줄기세포주, 줄기세포주등록,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 1. 들어가는 말

줄기세포 연구는 지금까지 불치병 혹은 난치병으로 불렸던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 기대와 관심이 너무 많아

서 생기는 부작용도 간혹 있었다. 특히 몇몇 줄기세포 연구의 경우 연구조작의 의심을 받았고, 실제 연구논문은 철회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줄기세포 연구를 향한 기대와 관심이 과도하게 되면 그것이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하게 되어, 일부 연구자들이 그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겠다는 무리한 욕심을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8A03034450)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리거나 그에 편승하려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2004년과 2005년 사이 연스지에 투고한 논문이 취소되는 이른바 “황우석 스캔들”이 있었다.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연구데이터가 상당부분 조작되었다는 점을 밝혔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사용된 난자가 생명윤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황우석 스캔들”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소재인 “줄기세포주등록반려 취소소송”도 이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다. 2008년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줄기세포주 등록에 관한 제20조의2가 신설되었다. 2010년 황우석 박사는 2003년 수립한 ‘Sooam-hES1’ 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을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등록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황우석 박사는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과 2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것이다. 특히 줄기세포주 등록제도가 어떤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법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정부가 반드시 줄기세포주를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한다. 생명윤리안전법학은 윤리적 규범적 고려를 그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법분야와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진다. 필자는 이번 소송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생명윤리안전법의 독특한 부분이 아직 법조실무계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은 그런 관점에서 생명윤리안전법학에 대한 법조실무계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 2.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둘러싼 쟁점

우선 본 논문의 소재가 되는 황우석 박사의 ‘Sooam-hES1’ 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반려 처분과 그 이후의 소송과정을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심적인 몇 가지 쟁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 (1) 줄기세포주등록거부처분과 행정소송

질병관리본부장은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구 생명윤리안전법”이라 하고,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안전법은 이하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이라 함)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줄기세포주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황우석은 2010년 5월 29일 피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2003년 4월경 수립한 ‘Sooam-hES1’ 줄기세포주(이하 “이 사건 줄기세포주”라 함)에 대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장은 2010년 9월 6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위원단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신청서반려처분(이하 “반려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반려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 사유 : 윤리적·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

① 윤리적 문제

: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선행된 조사(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밝혀져 있음.

② 과학적 문제

: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포주는 체세포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성생식연구는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님.

원고는 2010년 10월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년 11월 질병관리본부장을 피고로 하여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2012년 7월 19일 질병관리본부장이 항소하였으나, 2013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 판결문에서 제기된 쟁점**

1심 소송과 2심 소송을 거치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는 소송에서 어떤 쟁점이 제기되었

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심 소송과 2심 소송의 판결문은 그 내용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2심 소송<sup>1)</sup>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우선 2008년 6월 5일 생명윤리안전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 생명윤리안전법은 제20조의2<sup>2)</sup>를 신설하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구 생명윤리안전법은 ‘줄기세포주’를 “배양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로 정의하고(제2조 제10호),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0조의2 제1항),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0조의3 제1항),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줄기세포주는 각 호가 규정하는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의4 제1항).

그리고 구 생명윤리안전법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항은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수립되거나 수입된 줄기세포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게

1) 서울고법 2012누 22616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2) 제20조의2 (줄기세포주의 등록) ① 줄기세포주를 수립(수입)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제20조의3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라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데에 그 검증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한 자에게 줄기세포주의 검증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수입한 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등록신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 쟁점1 :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도입 취지

판결문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가 구 생명윤리안전법에 도입된 취지를 주로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판결문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배아의 생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 아니라, 배아의 생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줄기세포주연구도 배아 생성 등의 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배아연구기관으로의 등록, 배아연구계획서의 제출·승인 등)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배아 생성 및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난자제공자의 동의, 배아 복제, 배아 파괴 등 생명윤리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반면,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생명윤리 문제보다 연구활성화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배아 생성 등의 연구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구 생명윤리안전법은 줄기세포주 이용·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줄기세포주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분리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상 판결문의 논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둔 취지는 첫째,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생명윤리 문제보다 연구활성화의 필요성이 더 크고, 둘째, 따라서 배아 생성 등의 연구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등록제도를 둔 것이며, 셋째, 그에 더하여 줄기세포주 이용·제공 과정을 투명

하게 관리하여 줄기세포주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쟁점2 :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문은 생명윤리안전법의 제정, 법 개정의 경위 및 개정 취지 등을 전제로 반려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판결문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 생명윤리안전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하여 난자제공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것인지, 난자제공자로부터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수, 난자제공자에게 난자제공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규정한 법령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당시 생명윤리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였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둘째, 난자수급과정에서의 윤리 문제는 난자공여자의 의사결정과 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규제의 범위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해당할 뿐, 생명윤리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구 생명윤리안전법이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줄기세포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분리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

항 제1호는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수립 방법과 동의 절차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의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이상과 같은 판결문의 논증은 다음 몇 가지 쟁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생명윤리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당시는 생명윤리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생명윤리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부칙에 따르면, 생명윤리안전법 상의 윤리적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줄기세포주라고 검증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 3) 쟁점3 :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은 '줄기세포주'가 배아줄기세포주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배아 이외의 원천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주도 포함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즉, '줄기세포주'의 법해석을 둘러싼 쟁점들이다. 판결문이 주장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칙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줄기세포주'는

구 생명윤리안전법 제2조 제10호가 규정하는 '배양 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에 부합하는 모든 줄기세포주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립된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법에 따라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 또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인공수정배아·체세포복제배아에서 유래된 줄기세포주'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 구 생명윤리안전법 제2조 제10호는 줄기세포주의 개념에 관하여 '배양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어떠한 방식으로 유래한 것인지 규정하지 않다.

셋째, 구 생명윤리안전법 제2조 제5호에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체세포복제배아'의 개념을 규정할 때에도 '배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이 단성생식배아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였음에도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상 '배아'(제2조 제3호)와 '잔여배아'(제2조 제4호)의 개념이 구 생명윤리안전법이 규정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 역시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

넷째, 구 생명윤리안전법이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분리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난자의 수집 · 배아 복제 · 배아 파괴 등 윤리적인 문제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면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분야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수립된 줄기세포주 연구의 활성화 및 자율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판단된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생명윤리안전법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가 이 사건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sup>3)</sup>

이 판결문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제2조 제10호의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의조항이다. 둘째, 그 정의조항은 줄기세포

주의 원천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반드시 배아줄기세포주만을 등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성생식배아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이 된다. 셋째, 무엇보다 부칙을 둔 이유는 연구 활성화이므로, 연구자에게 불리한 규제적 방향으로 부칙 조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sup>4)</sup>

### (3) 쟁점에 대한 분석

이상과 같은 판결문의 논증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큰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둔 취지는 무엇인가, 둘째, 법해석상 '줄기세포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셋째, 생명윤리안전법의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이다. 이는 대체로 첫째는 쟁점1에 대응하는 것이며, 둘째는 쟁점3에 대응하는 것이고, 셋째는 쟁점2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3가지 물음은 사실 모든 쟁점의 밑바탕을 이루는 근본 문제로서 판결문에서 파악하는 모든 쟁점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쟁점을 법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되어서

3) 이에 더하여 판결문은 추가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려는 자가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별지 제12호의2 서식)에는 줄기세포주 구분란에 '수립 · 수입' 여부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줄기세포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된 것인지를 기재하는 난이 없고, 피고가 줄기세포주를 등록한 뒤 발급하는 줄기세포주 등록증(별지 제12호의5 서식)에도 줄기세포주의 생성방식을 기재하는 난이 없는 반면,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이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는 배아연구계획 대상이 잔여배아인지 체세포복제배아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난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은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한 배아 등의 연구단계와 달리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등록단계에서는 줄기세포주의 생성방식이 피고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4) 판결문에서는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요건도 쟁점이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한다. 이 쟁점에 대한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유전자지문분석검사에 의하여 다른 줄기세포주와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개체식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개체식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다시 원고의 권리 (혹은 이익)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등록을 반려했 공익을 형량하면 원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판결문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공익을 연구활성화의 측면 즉, 규제완화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쟁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공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4번째 쟁점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에서 정리한 쟁점들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 3.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

#### (1) 등록제도는 규제완화를 위한 것인가?

첫 번째 쟁점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두게 된 취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둔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문건은 찾기 어렵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입법한 구 생명윤리안전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때 제출된 여러 입법 자료를 살펴봐도 정확하게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법안의 제안이유<sup>5)</sup>에서는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간단한 표현이 있을

뿐이다. 판결문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를 법안의 제안이유와 비슷하게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물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새롭게 입법하게 된 배경에는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해 윤리적 문제점이 덜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새로 입법하기 전에는 정부가 배아연구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도 배아연구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서, 규범과 현실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sup>6)</sup>

구 생명윤리안전법 이전에는 줄기세포주 혹은 배아 줄기세포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배아의 보존 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이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이 규정에서 법해석상의 쟁점이 된 것은 “배아”의 의미 안에 “배아줄기세포”가 들어가는가 하는 점이었다. 정부는 배아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도 배아연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 연구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배아연구

5) 구 생명윤리안전법에 대한 입법 제안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 형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여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종간 체세포핵이식행위는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여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도모하면서도,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하고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6) 이에 대해서는 박준석,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의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1호, 2007, 169-192면

에 관한 규정은 형벌이 부과되는 조문이므로 실질적 형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해석의 기본원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 따라 배아연구에는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구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분양받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이제 그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구 생명윤리안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우선 법안의 제안이유나 판결문에서 규제완화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주요 취지로 들고 있는 것은 규범논리와 규범현실을 혼동한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구 생명윤리안전법 제정 이후와 그 이전의 범규범을 살펴보면, 배아연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줄기세포주의 이용에 대한 제20조의4가 새롭게 도입되어 배아줄기세포주가 이 조문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던 배아연구에 관한 조항 그 자체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규제의 근거가 되었던 조문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었다기 보다는, 과거 조문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규율하였다는 측면에서 규제합리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연구자에게 적용되던 규제내용이 변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규범현실에 관한 내용이 규범논리적 귀결은 아닌 것이다.

나아가 규범현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그 자체는 구 생명윤리안전법 개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이기도 하다. 즉, 규범현실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등록제도를 매개로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규제현실과 등록제도의 규제현실을 비교해 보면 등록제도가 훨씬 간편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규범현실적 판단이며, 규범논리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 (2) 규제완화 이외의 다른 제도도입의 취지는 없는가?

법안의 제안이유나 판결문 모두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에 대해 규제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의 제안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안의 제안이유에 규제완화 외에 다른 취지 설명이 없다고 해서 규제완화 만이 유일한 취지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안의 제안이유 이외에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운영 현황과 제도도입 취지를 참조할 수 있다. 나아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공신력있는 문건을 참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안전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줄기세포은행의 형태로 운영하여,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성과 품질을 갖춘 줄기세포주를 배양하여 이를 원하는 연구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연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있다.<sup>7)</sup> 이들 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이기만 하면 다 등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는 이유는 시중의 줄기세포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와 줄기세포은행을 통해 윤리성과 품질 모두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약해주는 효과를 연구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연구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연구에 이용된 줄기세포가 윤리적인 문제점 없이 수립되었으며 적절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는 소식지에서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sup>8)</sup> 질병관리본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줄기세포의 가치를 이용하고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 관련 정보의 통합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줄기세포주 등록(Registry)체계를 통해 줄기세포주의 특성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중략) 국내에서 배아

연구를 통해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과학적·윤리적 신뢰성을 높이고,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sup>9)</sup>

즉,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단순히 규제완화라는 측면보다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의 과학적·윤리적 신뢰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국내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몇몇 학술저서 및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최경석·김현철<sup>10)</sup>은 “줄기세포주 등록제 도입의 의의는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지니는 윤리적 문제에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대상으로 줄기세포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도록 하여 줄기세포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도 같은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의 윤리적·과학적 신뢰성, 즉 공신력을 보장함으로써 이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효

7) 백진아 외, “국내의 줄기세포은행 현황”, 인구의학연구논집 제25권, 2012, 6-12면; 윤보애 외, “미국과 영국의 줄기세포은행 시스템 비교”, 인구의학연구논집 제26권, 2013, 25-30면 등 참조  
 8) 2009년 7월 10일 “주간 건강과 질병” 제2권 제28호에 실린 “배아연구 및 줄기세포등록제도”라는 글(435-457면)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였던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어서 정부가 등록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9)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위의 글, 454-455면, 밑줄은 필자가 덧붙인 것임.  
 10) 최경석·김현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최경석, “줄기세포주 등록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규제와 쟁점”, 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의료윤리, 아카넷, 2012 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규제완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길 수 없는 이런 제도의 취지는 대단히 중요해서,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어떤 공익을 추구하고 그 공익의 의의가 어떠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판결문의 결론과 본 논문의 결론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연구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결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판결문은 이를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형식적 요건만 갖추었다면 가능한 한 모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반면, 본 논문은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주는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다른 나라의 등록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4. 법이론적 쟁점들

##### (1)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줄기세포주'의 의미

판결문은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줄기세포주'는 배아 줄기세포주 혹은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제2조의 정의 조항에 유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형식적인 근거가 되고,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등록을 원하는 연구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있다.

먼저 조문의 형식을 살펴보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

는 제20조의2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20조는 잔여 배아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며, 이 규정이 속해 있는 절은 '인공수정배아'에 관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별도의 조문이 아니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제20조의2로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이 줄기세포주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각했다는 주장의 좋은 근거가 되며, 법문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1)</sup>

둘째, 판결문과 같이 문언의 형식적 측면만 강조하면 줄기세포연구의 현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판결문의 논리에 따르면 성체줄기세포를 수렵한 사람도 등록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성체줄기세포 연구자들은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인체유래물연구를 포섭하기 이전에는 전혀 생명윤리안전법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문제가 된 구 생명윤리안전법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판결문의 논리대로라면 이들도 형식적으로는 다 등록의 대상이 되게 되므로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강화가 되어 버린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도가 입법될 당시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줄기세포주는 배아줄기세포주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었고, 체세포핵이식배아연구와 단성생식배아연구가 승인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런 현실과 괴리된 형태로 입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결론적으로 조문의 체계적 해석과 줄기세포연구의 규범현실을 고려하면 비록 '줄기세포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배아줄기세포주와 이를 준용하는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주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11) 김현철, "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법적 쟁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2012, 292-293면 참조

## (2) 생명윤리안전법의 윤리적 기준과 생명윤리법학의 특성

판결문은 생명윤리안전법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립한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는 생명윤리안전법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부칙을 둔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생명윤리안전법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법률로 형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보편적 생명윤리로서 적용되어 오던 내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생명윤리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법률상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사 혹은 의생명과학자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전문직 윤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법률상 생명윤리안전법의 내용들이 법률 시행 이전에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상 합당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들은 당연히 기대해야 하는 것들인 것도 사실이다.

둘째, 위와 같은 이해는 부칙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판결문이 주장하는 바와 아주 대조적인 측면을 가진다. 판결문은 부칙 제2조<sup>12)</sup>와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sup>13)</sup> 등을 둔 이유는 규제완화와 연구활성화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생명

윤리의 보편적 측면을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생식세포나 배아 제공자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지만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엄격하게 보관이나 관리를 하지 않아 일실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생명윤리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법률서식이 통일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제공자의 동의 서명이 의무기록의 한 모서리에 행해지는 등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 보다는, 법 시행 이전에도 연구자들이 “생명윤리적으로 행위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연구자들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생명윤리에 위반된 행위”로 인해 얻어진 줄기세포까지 반드시 등록해 줘야 한다는 결론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둔 가장 중요한 취지 즉, 연구자들을 위한 공신력 있는 줄기세포주 이용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아도 자명하게 도출된다. 어느 연구자가 “명백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했다고 “전세계에 알려진”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연구에 이용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명백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하여 수립한 줄기세포 조차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12) (이미 수립되거나 수입된 줄기세포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13) 제12조의3(줄기세포주의 등록기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줄기세포주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립 방법과 동의 절차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일 것  
 2.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줄기세포주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2005년 1월 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2.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한 줄기세포주인 경우

### (3) 등록반려 처분의 법적 성질

결론적으로, 이상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생명윤리에 위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한 핵심적인 취지인 우리나라에서 수립하여 등록한 줄기세포에 국제적으로 신뢰성의 부여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결문은 법률 문언상 형식적으로 줄기세포주 등록기준에 합당하다면 질병관리본부는 반드시 등록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줄기세포주 등록 여부의 결정은 문언상 형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공신력을 담보함으로써 많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연구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

판결문은 반려처분을 당한 연구자의 불이익이 규제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관점에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대외적 공신력 담보는 수많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공신력이라는 가치와 명백한 윤리적 문제점이 있는 연구로부터 도출된 줄기세포 하나와의 형량 문제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처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속행위가 아니

라 재량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14)15)</sup>

### 5. 미치는 말

지금까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법원의 논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법원의 논증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를 일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생명윤리안전법과 생명윤리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등록제도를 통해 등록된 우리나라 줄기세포주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줄기세포연구자들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줄기세포가 윤리적이고 품질있는 줄기세포라는 증명해야 할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줄기세포주 등록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문언상 형식적으로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만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주어야 하는 정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알려진 줄기세포주를 등록시켜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제거해 주는 것 이상의 상당한 공익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14)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 17593 판결 등)

15) 줄기세포주 등록이 재량행위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 구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에서 등록서류의 심사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서류의 함의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며, 그 파악의 결과 형식 요건에도 불구하고 등록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판결문은 아마도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에 대한 사회일반 그리고 법조계의 상식적인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라 짐작된다. 그만큼 생명윤리학 그리고 생명윤리법학은 아직 우리사회에 널리 이해되지 않은 생소한 학문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생명윤리학 그리고 생명윤리법학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여 그 특유한 성격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학문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 **Some Considerations on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in Korea**

**KIM Hyeon Cheol\***

In this article, I point out some mistakes of arguments that Seoul High Court mentioned and suggest new alternatives. Arguments of Seoul High Court have many problems, which fail to pick out the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and don't understand the special relation between bioethics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I suggest that the essential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is to give public confidence to Korean stem cell lines to be registered and through this system stem cell researchers have many conveniences to reduce some burdens to prove the quality and ethicality of the stem cell that they have used. Therefore, government don't have the duty to register all stem cell lines to be submitted because maintaining the public confidence is the important request of public interests even though the documents submitted meet the formal standards of Korean laws.

**Key words:** Stem cell lines, Registry of Stem cell lines, Bioethics and Safety Act

투고(접수)일(2014년 5월 9일), 심사(수정)일(1차: 2014년 6월 9일, 2차: 6월 16일), 게재확정일(2014년 6월 23일)

---

\*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